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신한금융플러스(주)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대리점	기관주의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9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및 과태료 1,500만원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
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)

□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,

○ 신한금융플러스(주)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. 5. 28. ~2021. 7. 29.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㉠생명보험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2.6백만원)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110.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1항 제2호
2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」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